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047 발의년월일 : 2014. 2. 3.

발 의 자 : 김순점 의원 외 6명

1. 개정사유

현행 구정질문 방식인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 (안 제75조의2 제3항)

나. "보충질문"을 "구정질문"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름 (안 제 75조의2 제4항)

다.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를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은 포 함되지 아니한다."로 개정

(안 제75조의2 제5항)

라.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를 신설 (안 제75조의2 제6항)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신설한 다.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5분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수는 1일 3명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혅

颜

①~② (생략)

- ③ 구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 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과할 수 없고, 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15 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 항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 의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다.

<신설>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개

젔

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하 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48시 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수는 1일 3명 이내로 <u>다.</u>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12.10.22)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삭제 <2002.12.30>
-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3일 김순점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0일
- 다. 상정일자 (의안번호 제1047호)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년 2월 12일 상정의결)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년 2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순점 의원)

가. 제안이유

·현쟁 구정질문 방식인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
- 2) "보충질문"을 "구정질문"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 름(안 제75조의2 제4항)
-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를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개정(안 제75조 의2 제5항)
- 3)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를 신설(안 제75조의2 제6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검토보고자 : 박용순 전문위원) 본 개정 규칙안은 핵심 내용은 현행 내용은 현행 구정질문 방식인 일괄질 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 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시 활력있고 긴장감 있는 질문 및 답변이 예상 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선택에 따라 기존 방식인 일괄질문・일 괄답변 방식으로도 구정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결과 : 수정가결 4.

□ 수정이유

- 구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회의 개의 48시간에서 72시간 전으로 수정하고
-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 답변요지서를 받아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함
- 충분한 구정질문 시간 확보로 구정질문의 내실화 도모
- ※ 첨부서류 1. 수정안
 -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47 관련

제안년월일 : 2014. 2. 19.

제 안 자 : 권태호 의원

1. 제안사유

현행 구정질문 방식인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75조의2 제3항)
- 나.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안 제75조의2 제4항)
- 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안 제75조의2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구정질문"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질문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 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 ⑥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② (생략)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 개의 72시간 전까 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 자 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 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④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요지 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질문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	